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7 선고 2024가단52942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10.

판결 선고2024. 11. 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1.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9. 16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12. 13. 체결된 매매계약을 57,413,271원 및 이에 대한 2024. 2. 17.부터 2024. 3. 17.까지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2024. 6. 13.까지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2024. 10. 10.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.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백상빈

별지